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10362 판결 [이득상환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103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2135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하나은행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 선고 2016. 12.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2135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수표금 청구

1) 원고는 2014. 2. 5. M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은 정당한 소지인 인바, 이 사건 각 수표의 채무자인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인이자 지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수표금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2) 살피건대, 수표 소지인의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인바(수표법 제51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인 2014. 2. 15.(발행일이 2014. 2. 5.이다)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12.

2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2016. 11. 2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2014. 2. 11.경 이 사건 각 수표가 지급거절되어 이를 회수하여 다시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거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처럼 원고가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각 수표를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수표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수표를 환수한 날로부터 시효가 기산되므로 원고가 재차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수표의

환수일은 적어도 2014. 2. 15. 이전이라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나. 이득상환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였고 수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각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 그 수표상, 민사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수표 액면금 상당의 금액만큼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 액면금 합계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득상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수표법 제63조 소정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수표법 제39조에 따라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던 경우)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 소지인이 발행인 등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때까지는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았다는 고객들이 이 사건 각 수표를 피고에게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것이므로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인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이 사건 각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의 지급거절 및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각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이득상환청구권은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이다[설령 이 부분 주장을, 원고가 수표상의 권리 소멸 당시의 소지인(원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고객들)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환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지인에게 발생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 이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의 고객들이 피고에게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다가 지급거절되었을 뿐이어서 위 고객들 역시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인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소멸한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창형

판사김민기

판사이한일